

공시송달 공고

-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4.2.28. ~ 2024.3.14. (15일 간)
- 공고대상

부과대상		위반내용	부과금액	반송사유
성명	주소		과태료	
김○영	인천 미추홀구 경인로***번길 27, ***동 ****호 (도화동, 주안역미추홀***아파트)	쓰레기 무단투기	200,000원	폐문부재 등
이○혁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**-, ***호(효자동3가)	쓰레기 무단투기	50,000원	폐문부재 등

4. 공고내용

- 가.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,
- 나. 위 공고기간 내에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(☎032-728-6325)에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
- 라.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%의 가산금이 가산되며, 매 1개월 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4년 2월 28일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동장

